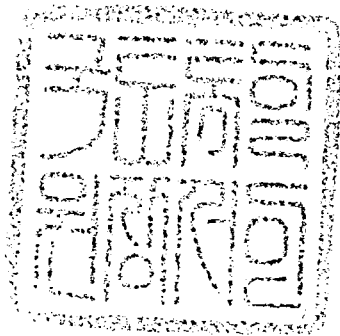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7.



研究機關：釜山大學校 法政大學

研究責任者：許 鍾 玉

目 次

一. 序 言	3
二. 階層構成과 그 動態	5
1.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分類	6
2. 「党性」에 依한 階層分類	9
三. 階層別 社会意識構造의 「環境」으로서의 生活關係	13
1. 勞働者階層의 生活關係	15
2. 農民 階層의 生活關係	20
3. 事務員 階層의 生活關係	25
四. 北韓住民의 社会意識構造 形成에 있어서의 Ideology 教育政策의 意義와 中心課業	33
1. Ideology 教育政策의 意義	33
2. Ideology 教育政策의 段階的 中心課業	34
3. Ideology 教育政策과 組織体系	44
五. 階層別 不滿要因 實態와 社会意識 動向	50
1. 社会意識構造와 不滿要因	50
2. 階層別 不滿要因 實態와 社会意識 動向	52
1) 核心群衆의 不滿要因 實態와 社会意識 動向	53
2) 基本群衆의 不滿要因 實態와 社会意識 動向	55
3) 複雜한 群衆의 不滿要因 實態와 社会意識 動向	56

一. 序 言

8.15 解放 이후 어느덧 20 餘年이 흘러 갔다. 우리는 統一을 위해서 꾸준히 努力해 왔지만 別로 成果를 얻지 못했다.

1970 年 8 月 15 日 朴大統領의 이른바「8.15 宣言」으로 다시 現實的인 南北對話의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시 그 이듬해 8 月 12 日에는 南北赤十字會談을, 그리고 昨年 7 月 4 日에는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가져 이제까지 數차례의 實務會談을 가져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6 月 23 日에는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特別聲明」이 内外에 천명됨으로써 보다 現實的인 平和統一에의 接近을 摸索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聲明에서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土統一이란 그렇게 短時日內에 成就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이 地域에 있어서의 일련의 周邊情勢의 發展이란 外的環境條件에 依한 制約性이라는 面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根本的인 것은 역시 그간 南北間에 造成된 內的인 沮害要因일 것으로 생각된다.

事實 20 餘年이란 긴 歲月이 흘러가는 동안에 南北間에 있어서는 서로가 容納하기 힘든 異質的인 生活關係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兩體制下에 있어서는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變化中에서도 가장 현저한 것은 사람들의 價值觀과 思考方式을 비롯한 社會意識構造의 變化라고 하겠다. 따라서 逆說的으로 統一에의 念願과 要請이 懇切하면 할 수록 그 內容 沮害要素부터 解

消乃至除去해야 한다는 論理가 더 強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여기 이 論文도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의 한 基礎的인 作業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그 作業의 性質上 그 보람도 느낀다.

그러나 막상 論文을 作成해 보겠다고 나서고 보니 그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도 特히 큰 고충은 論文作成에 必要한 資料를 얻기가 매우 힘 들었다는 事實이다.

삼 말 할 必要가 없겠지만, 論文作成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要件은 資料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더구나 論題가 그 性質上 北韓 住民의 生活關係와 結付되는 實証的인 資料를 必要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苦衷은 더 컸다. 卽 實証的인 素材란 現地에서의 科學的인 調查方法에 依한 分析 結果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關係上, 辯明같지만 手中에 들어온 若干의 資料를 바탕으로 作成할 수 밖에 없어서 不可避 迂廻的인 方法으로 接近을 試圖해 왔다. 말하자면 社會意識 意識構造의 分析에 있어서 그 意識의 構造的인 性格面보다도 그 意識構造가 形成될 수 있었던 所謂 「環境」으로서의 生活關係와 그 「環境」속에서 意識構造形成에 能動的인 役割作用을 한 所謂「入力」으로서의 Ideology 教育政策을 中心으로 分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컨대, 이러한 分析方法도 社會意識構造의 變動 可能性을 動態的으로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試圖해 볼 수 있는 方法이라고 思料된다.

二. 階層構성과 그 動態

사회를 몇개의 階層으로 区分하는 方法은 一定 社会를 構造的으로 分析을 試圖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具體的이며 그리고 現實的인 社会關係를 把握하는 데 있어서도 極 有用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恒常 問題가 되는 것은 階層分化的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問題이다. 体系論的 立場의 用語를 빌리면 階層 分化 規定의 變數의 問題로 되며 또한 境界 設定의 問題로 된다.

그런데, 社会主義國家에 있어서는 Marx의 學說에 따라 社会의 基本單位를 「階級」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며 生産手段의 有無와 勞動의 社会的 役割 및 社会的 關係등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今일에 있어서는 종종 Lenin의 階級에 關한 概念 規定을 즐겨 引用하고 있음을 본다. 卽 그에 依하면 「階級이란 歷史的으로 規定된 社会的 生産의 体制속에서 占하는 地位의 面에서, 生産手段에 對한 關係 面에서(大部分은 法律에 依해서 確認되고 成文化되어 있는), 勞動의 社会的 組織에 있어서의 役割 面에서, 따라서 自己가 處理할 수 있는 社会的 富의 分配의 獲得方法과 그 分量의 크기라는 面에서 他者와 區別되는 사람들의 큰 集團이다. 階級이란 社会經濟의 一定한 体制속에서 占하는 地位가 相違하므로 因하여 一方의 集團이 他方集團의 勞動을 占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集團을 말 한다」^{註1)} 이라고 하여 特히 5개의 規準要素를 들고 있다.

註1. 「레닌」全集 29卷 日本書房版 P.212.

勿論 이와같이 階級區別의 根因을 經濟的 要因에 求하지 않고 다른 分野의 要因 例컨대 ① 權力, 政治的 勢力 ② 權威, 聲望, 社會的 勢力 등과 같은 要因에 求하고 있는 學者들도 있는가 하면 「가아거」(Geiger)와 같이 生産關係뿐만 아니라 人種, 所得, 教養, 職業 등 多様な 變數를 層化 規準으로 動員하고 있는 것을 본다.

아무튼 階級은 社會主義 學者들에 依하면 적어도 文明社會의 基本的 社會 單位이며 諸種의 社會 結合의 性格, 屬性을 決定하는 關係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社會關係 特히 社會意識構造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먼저 基本的 社會 單位 構成과 그 動態부터 把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런데, 北韓에 있어서의 階層別構成關係를 分析해보면 그 構成要素에 있어서 社會의 階級的 分化를 否定하고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分類와 그리고 所謂 「党性」에 依한 分類를 勸策하고 있는 것을 본다. 더구나 機能分類에 있어서는 勞動者, 農民, 事務員의 세 階層으로 單純化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차례로 檢討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分類

다음 圖表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46年 現在 人口를 100으로 換算했을 경우 職業別 人口 構成은 勞動者 12.5% 個人農民 74.1% 事務員 6.2% 手工業者 1.5% 企業家 0.2%

商人 3.3% 其他 2.2%로 되고 있다. 그런데 1956년에 있어
 서는 勞働者 27.3%로 增加하였고 個人農民은 16.0%로 激減하고
 있는 反面에 農業協同組合員이 40.0%로 새로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手工業者 商人은 減少되고 있으며 企業家は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趨勢는 1959년에 가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即 勞働
 者 37.2% 農業協同組合員 45.7% 事務員 13.4% 協同團體加入
 3.3% 其他 0.4%로 되고 있으며, 벌써 個人農民, 手工業, 商人,
 企業은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리하여 1965年 現在 勞働者
 41.0% 農業協同組合員 40.8% 事務員 16.5% 其他 1.7%(組
 合員)로 되어 住民의 階層은 아주 單純化되고 말았다. 이것을
 圖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註2)

이러한 階層別 構成 動態는 根本的으로 北韓의 社會主義的 經濟
 政策에 依한다고 하겠다. 即 解放後 그 이듬해 1946년에 있게
 된 「土地改革令」 및 「重要産業國有化令」을 基礎로 하여 生産手段
 의 私有化를 國有化 乃至 社會的 所有로 옮겨가는 政策을 取해간
 것이다. 農業協同化 過程은 그 뚜렷한 한 例이다.

註2. 資料：北韓經濟統計集 P.144.

(図表1)

住民の職業別構成

区	年度別		1946年末	1949年末	1953	1956	1959	1960年末	1963	1965年末
	数	率	数	率	率	率	率	率	率	率
労働者	12.5	19.0	21.2	27.3	37.2	38.0	40.1	41.0	40.1	41.0
事務員	6.2	7.0	8.5	13.6	13.4	13.7	15.1	16.5	15.1	16.5
農業協同組合員	-	-	-	40.0	45.7	44.4	42.9	40.8	42.9	40.8
個人農民	74.1	69.3	66.4	16.0	-	-	-	-	-	-
協同団体加入	-	0.3	0.5	1.1	3.3	3.3	1.9	-	1.9	-
手工業者	1.5	0.8	0.6	0.3	-	-	-	-	-	-
企業家	0.2	0.1	0.1	-	-	-	-	-	-	-
商人	3.3	1.7	1.2	0.6	-	-	-	-	-	-
其他	2.2	1.8	1.5	0.5	0.4	0.3	-	0.3	-	1.7 (組合員)

그러다가 1957年 10月30日에는 所謂 內閣決定 第10号로서 「個人 諸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促進시키기 爲해 1958年 1月 1日 以後 個人의 諸行爲를 一切 禁止한다」고 함으로써 1958年初부터 小企業은 勿論 個人商業까지 完全히 抹殺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은 1958年 8月末을 期하여 「北韓에는 社會主義 經理形態가 完成」되었다고 宣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註3)

2. 「党性」에 依한 階層分類

앞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社會에 있어서는 「党性」이라는 要素가 階層分類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要素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分類 方法은 政治的 要請에 依한 것으로 主로 政治變動期에 있어서 크게 作用한다고 하겠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는 自由世界에 있어서와는 달리 「党性」을 높이 評價하여 全的으로 社會生活關係에 適用시키고 있다.

北韓 勞動黨은 1957年 5月30日 所謂「黨務委員會에서 「反革命分子와의 鬪爭을 全黨的 全人民的 運動으로 展開하는데 對하여」라는 決定을 採択하여 顛覆된 階級의 反抗勢力 即 反革命分子와의 鬪爭을 基本的 課題로 삼았으며 다시 1958年 12月부터 1960年末까지 約 2年間に 걸쳐서는 所謂 「中央黨 集中 指導 事業」을 大的으로 벌려 前記事業을 強力히 推進시켰던 것이다. 이 事業

註3. 民主統一論, 國土統一院統一研修院, PP. 181-182.

에서는 各部門에서 熱誠黨員 7千名이 參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北韓은 이 事業을 通하여 全 北韓住民을 二個 部類로 分類하였는데 卽 ① 革命的 要素를 가진 階層과 ② 反革命的 要素를 가진 階層分類가 그것이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分類하면

① 革命的 要素階層

革命家 家族, 愛國烈士, 遺家族, 戰死者 家族, 軍人家族, 黨 및 政權機關, 社會團體 幹部家族, 戰爭時 被殺者家族

② 反革命的 要素階層

越南者家族, 反共團體, 加担者와 그 家族, 宗教人 및 그 家族, 過去 地主 및 그 家族, 歸還捕虜, 南韓出身, 軍隊忌避者, 殺代人 및 出所者, 過去 個人商工業者等이 이에 屬한다.

그러다가 北韓 勞動黨은 1966年 2月에 召集된 黨 中央委員會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各界各層 群衆과의 事業을 強化하는데 對하여」라는 議題를 討議 決定하였다.

同 決定은 北韓의 階級路線과 階級政策을 根本的으로 變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從來부터 해온 모든 經驗을 綜合하여 體系化시킨 것이다.

우선 여기서 北韓住民을 基本群衆과 複雜한 群衆으로 크게 두 가지로 区分하고 基本群衆은 다시 核心群衆과 基本群衆으로 分類 그 外는 複雜한 群衆에 屬하는 것이다.

① 基本群衆

ㄱ. 核心群衆에 屬하는 階層

核心群衆은 勞務者 및 雇農, 貧農出身의 勞民으로서 過去나 現在의 政治生活에서 아무런 罪가 없는 黨의 熱誠分子를 말한다.

- 反日 民族 解放鬪爭에 參加한 사람들과 그의 家族, 抗日武裝鬪爭에 加担한 사람들과 그의 家族, 南韓에서 地下鬪爭 및 遊擊鬪爭에 加担한 者와 그 家族, 在日 僑胞로서 朝總聯 幹部로 活動한 者 및 그 家族, 海外에서 「北韓을 위해 鬪爭하는」 僑胞 및 그 家族, 6.25 動亂 當時 戰死한 戰死者 家族, 軍人家族, 除隊軍人, 黨 및 行政府와 그 家族

ㄴ. 基本群衆

核心群衆에 屬하지 않고 複雜한 群衆이 아닌 勞動者, 農民層에 屬하는 者를 말한다.

② 複雜한 群衆

ㄱ. 階級的 土台로 본 複雜한 群衆

- 日帝時 反日鬪爭에 協助한 地主에 對해서는 監視와 制裁對象에서 除外하나 地主의 根性이 나타나지 않도록 教養한다. 解放後 自進해서 當局에 土地와 財産을 바쳤거나 農民들에게 率先하여 分配해 준 地主는 監視對象에서 除外시키나 地主의 根性으로 黨事業을 해칠 때에는 嚴格한 制裁를 加한다. 土地改革 當時에 土地를 沒收當했거나 追放된 地主는 制裁對象에 屬하며 監視中 若干의 過誤라도 있으면 処罰된다. 富農도 地主와 同

一視하며 些少한 過誤로 크게 処罰된다. 中農中 解放前의 中農은 自由主義와 個人主義가 씩트지 않도록 監視하고 解放後 中農은 分配에 依한 自己 体制下에서 이루어졌으므로 一般 基本階級과 같이 取扱한다. 資本家와 中小企業 및 商人은 資本家階級으로 監視의 對象이 된다. 日帝時의 인테리 階層도 監視의 對象이 된다. 6.25 動亂時에 생긴 階層, 越南者 家族, 治安隊 加担者 및 그 家族, 歸還捕虜, 殉職者(戰爭時期敵으로 誤認되어 被殺된 家族) 暴死者家族(非正規兵으로 動員된 者).

ㄴ. 前職에 따른 階層

一日帝時 面書記 以上の 官職, 日帝時警察官, 日軍 志願兵, 日軍將校, 憲兵密偵, 民防團 幹部, 山林官吏, 社會道德面에서 過誤를 犯한 階層, 出所者 및 그 家族, 服役中 家族, 宗教人 家族 등으로 区分되고 있다. 註4)

註4. 「국토통일」, 국토통일원, 1973.4월호 PP.59-60.

三. 階層別 社会意識構造의 「환경」으로서의 生活關係

우리는 이미 前章에서 北韓의 社会階層構成이 社会主義的 經濟政策에 따르는 生活關係를 바탕으로 分類되고 있으며 또한 그 課業을 遂行하기 위한 政治的 要請에서 所謂「党性」에 依해서 層化되어지고 있음을 봤다. 그런데 事實 北韓에 있어서는 이 部門뿐만 아니라 社会意識構造의 形成問題에 있어서도 特히 經濟的인 生活關係를 決定的인 要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根源的으로 찾아 보면 역시 Marx의 理論에 基礎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定式論에 集約할 수가 있다고 본다. 即 Marx는 그의 著書「經濟學 批判」(1859年)序文에서 土台와 上部構造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間은 自己들의 生活의 社会的 生産에 있어서 自己들의 意志와 關係없는 一定한 必然的인 諸關係 즉 自己들의 物質的 生産力의 一定한 發展段階에 適應하는 生産關係를 맺는다. 이런 生産關係의 總体が 社会的 經濟的 構造를 즉 現實的인 土台를 形成하고 있으며 그 위에 하나의 法律的 및 政治的 上部構造가 形成되고, 그리고 이에 一定한 社会的 意識의 形態가 照應하게 되는 것이다.

物質的 生活의 生産樣式은 社会的, 政治的, 精神的, 生活過程 一般을 制約한다.

人間의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存在

가 그들의 意識을 規定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

이것은 곧 社會意識과 社會的 存在와의 關係에 對한 根本問題를 規定할 것으로서 今日 Marx主義들에게 있어서는 한 定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도 이러한 範疇를 벗어날 수 없었고 社會意識의 問題도 이러한 觀點에서 條件지워 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解放後 政權을 잡자 곧 生産手段을 國有化 乃至 社會的 所有로 옮기는 方向으로 積極 推進했다. 그것은 生産關係를 規定 짓는데 있어서 生産手段의 所有關係가 가장 重要한 役割要素로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即 1946年6月24日에 所謂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1946年6月24日에는 「勞動法令」, 1946年6月27日에는 「農物現物稅에 關한 法令」, 그리고 1946年8月10日에는 「重要産業 國有化에 關한 法令」등을 發表하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北韓에 있는 産業施設의 90%以上과 地下 水力 및 山林資源의 全部가 「公有化」되었고 10名 以下の 從業員이 일하는 小規模의 企業所만이 個人經營으로 남게 되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1957年10月30日자로 이른바 內閣決定 第10號로써 小企業에 있어서의 個人行爲를 禁止 시켰으므로 1958年初부터 小企業은 勿論 個人商業까지 完全히 抹殺되었던 것이다. 同時에 農業集團化는 推進되어 1958年8月末을

註 1) 「맑스·엔겔스」選集(大月書店版), 3卷, PP, 2-3

期하여 「北韓에는 社會主義 經理形態가 完成되었다」고 宣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의 生活關係 特히 經濟的 生活關係는 우리의 것 하고는 처음부터 달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곧 우리의 社會意識構造하고는 다른 北韓의 社會意識構造가 形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며, 한편 또한 그 生活關係가 社會意識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 限에 있어서는 即 「環境」으로서 作用하는 以上,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類型의 社會意識構造의 「內在的 傾向性」을 갖게 하는 因子의 役割을 한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 「內在的 傾向性」自体는 類型화된 社會意識構造는 아니다. 다만 特히 流動性과 潛在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強力한 政治的 Ideology 教育政策에 依해서 비로서 社會意識으로서 構造性을 갖고 類型화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社會意識構造의 問題는 우선 그 社會意識構造를 形成 可能케 하는 「環境」으로서의 生活關係의 究明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하여 다음으로 그 속에서 한 社會意識構造로서 形成될 수 있는 「內在的 傾向性」에 積極的으로 役割作用을 하는 Ideology 教育政策의 究明이 있어야 하겠다.

1. 勞働者 階層의 生活關係

앞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이른바 「土地改革令」과 「重要産業國有化令」은 私有財產制 徹底라는 Marx의 理念을 實現시키고자한 措置였다. 이 措置에 依해서 重要産業은

모두 国有化되었다. 即 「全人民的 所有」로 된 것이다. 따라서 勞動者는 党的 意思에 따라 共同勞動에 對한 共同分配의 原則下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遂行하는 모든 勞動力은 中央集權的인 唯一 管理制 原則에 依해서 計劃되고 統制되며, 配置되는 것이다. 即 勞動者는 다만 所謂 「人民經濟計劃」의 劃一的인 計劃에 따라서 配置되며 管理運營되는 것이다.

이러한 社会根拠地가 다름 아닌 国营企業所이다. 所謂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는 原則에 따라 国营企業所와 關係를 맺는다. 따라서 国营企業所와의 關係는 곧 勞動者의 生活關係를 規定지워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勞動者의 拠点인 国营企業所의 現況을 보면 從業員 5,000名 以上の 特級企業所 48個를 필두로 4,173個所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이中 從業員 100名 以下の 企業所가 2,578個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50年代末부터 推進해 온 所謂 小規模의 地方工場들로서 特히 消費製品生産을 위해서 設立한 것이다. 이中 1,760個所는 1970年부터 71年間에 세워진 工場들로서 이는 消費材 生産에 있어서 落後를 補償하고 都市와 農村의 生産的 連繫를 強化하기 위한 方策으로 풀이 된다. 또한 地方工業 育成의 戰略的 側面은 地方의 女性勞動力 등을 活用하기 爲한 手段인 것이다.²⁾

勞動者의 種類는 人民經濟部門別로 区分할 수 있는데 大体로 職業

註2) 「北韓社会文化体系의 經驗的 分析과 變動모델構成」 (研究責任者者 안병민) 1972.12. PP.90-91

同盟 組織을 基準으로 分類할 수 있다. 왜냐 하면 勞動者는 職業同盟에 産別로 加入하고 있기 때문이다.

勞動年齡은 16 歲로 되어 있으며 男子는 60 歲, 女子는 55 歲까지 無條件 勞動에 從事해야 한다.

말하자면 年小者의 勞動을 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16 세가 되면 누구나 自己의 所望대로 産業部分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勞動力에 對한 總體的 管理는 內閣 勞動省이 관장을 하고 있으며 各地方에서는 該當「人民委員會」의 「勞動局」 또는 勞動部에서 統制 管理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職場으로 補職할 경우에는 반드시 市.郡人民委員會 勞動部를 經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配置에 있어서는 各工場企業所마다 勞動者의 T O 가 있으며 이에 根拠하여 勞動을 管理하는 該當部署에서 調整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本人이 가고 싶다 할지라도 T O 가 없으면 보내 주지 않는다. 따라서 勞動者의 自發的인 職場移動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生産計劃에 따르는 勞動者의 T O 가 초과되었을 때만 곳으로 移動시킬 수 있다. 그리고 移動業務에 있어서는 人民委員會 勞動部에서 取扱하고 있으며 移動할 경우에는 勞動部가 發行한 移動證明書를 交付받아 該當場에 提出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點은 人間의 自由로운 職業選擇의 自由와 住所移動의 自由를 尊重하는 民主主義 體制하고는 棼 對照的인 것으로 不滿要因의 한 根源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 勞動條件面에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勞動時間을 보

면 労働法令에 依하여 成人労働者は 8時間을 労働時間으로 定해 있으며 有害職場에서 労働을 할 경우에는 労働時間을 7時間으로 定하고 있다. 그리고 12歲以下の 女子를 3名以上 扶養할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는 6時間을 労働을 하도록 되어 있다. 其他 超過労働의 경우에는 原則적으로 基本勞賃 以外에 手当을 支給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各作業場에서는 医療, 休息 및 娛樂施設이 되어 있어서 各 己 労働者들은 그들의 家族까지도 利用하고 있다. 그리고 労働者들은 大部分 各種「씨클」에 한개 以上 加入되어 있기 때문에 休憩時間에는 「씨클」活動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잠시라도 休憩할 수 있는 條件이 생기면 集團的인 群衆舞踊을 하는 것이 特色이다. 3)

다음 公傷者에 대한 処遇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労働者가 作業中 負傷을 당했을 적에는 無料로 治療를 받을 수 있으며 治療期間에도 俸給(勞賃)을 70%以上을 받을 수 있다. 勿論 食糧 配給도 받는다. 負傷結果 不具 또는 長期治療를 要할 경우에는 嚴密한 診斷의 結果에 따라 年金을 받을 수 있으며 賃金の 最高 80%까지 每月 支給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 労働條件 中에서도 가장 重要な 構成部分을 이루고 있는 賃金制度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일별해 보자.

註3) *ibid* P.154

労働者들의 基本賃金は 技術労働과 重労働, 職種の 重要性등을 參
 酌하여 設定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軍需工場이며 다음으로
 鉉山労働者, 金屬(製鉄, 製鋼部門) 遠洋漁業 化学工場 労働者인데
 労働者 勞賃基準으로 級数制度를 実施하고 있다. 級수는 經驗과
 技術등을 參酌하여 設定되었는데 級數가 높을 수록 基本勞賃을 많
 이 받는다. 勞賃中에서도 一般的으로 낮은 部門은 食料品 工場,
 紡織工場 등이며 작은 工場들은 級數査定이 없어 平均的으로 基本
 賃金を 設定하고 있다. 級數는 職種에 따라 差가 있으나 1級으
 로부터 8級으로 区分되어 있는데 1級과 8級 사이에는 한 級數
 에 따라 5원~10원 程度의 差額이 있다. 그리고 基本賃金 以
 外에도 計劃達成 여부에 따라 超過達成時에는 加給금이 支給되는데
 一種의 賞金과 같은 것이다. 4)

大体로 労働者の 賃金は 他的 階層에 比해서 높은 便이라고 한
 다. 그것은 1970年度의 労働者の 平均賃金は 70원으로 推定되
 며 이것은 各種 社会団体の 長級の 報酬水準보다 높다고 하겠다.
 即 聯盟委員長 60원 社勞青委員長 50원으로 되어 意外로 낮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5)

한편 이것 以外에도 労働者들은, 다른 階層에 못지 않게 配給糧
 穀을 받고 있다. 勿論 職種에 따라 다르지만 一般労働者인 경우
 700g 糧穀(白米, 雜穀比 5:5) 받고 있다.

註4) ibid PP.155-156

註5) ibid P.91

2. 農民階層의 生活關係

北韓 勞動者에 있어서 國營企業所가 生活의 拠点이라고 하면 農民에 있어서의 生活 根拠地는 協同農場일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勞動하며 그 勞動의 量에 따라서 分配받아 生活을 營爲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民이 協同農場과 因緣을 맺게 되기까지는 數多한 曲折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한편 그 曲折은 바로 北韓 農民階層의 社會意識構造의 變化 및 形成 過程을 말해 주는 素材인 것이기도 하다.

北韓政權은 벌써 政權을 잡은 初期부터 重要 産業部門은 勿論, 農業에 있어서도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의 完成을 爲하여 個人農 經營을 社會主義的 集團經營으로 改編하는 作業을 했다. 參考로 當時의 所謂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 (1946.3.5) 이 實施되기 以前의 北韓地域의 土地所有狀況을 보면 總耕作面積은 1,982,431 町步이었는데 이 面積의 58.2%에 該當하는 1,154,838 町步가 地主에 屬하고 所謂 小作地面積이었다. 그런데 當時의 地主戶數는 46,134 戶로서 全農家戶數의 4%에 該當했다. 그리고 自家農은 251,261 戶로서 全農家戶數의 25%에 該當되었고 小作農民은 435,789 戶로서 43.4%에 達한 것이었다. 그것이 「土地改革」의 結果 沒收된 土地가 總 1,097,352 町步였으며 이는 總耕作面積의 55.4%에 該當하는 것이었다.

當時 沒收對象은 主로 前 日人所有地를 비롯하여 民族反逆者, 그리고 1農戶當 5町步 以上の 所有 및 團體所有地 등이었다. 그리

하여 沒收된 土地는 所謂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原則下에 農民에게 分配되었던 것이다. 6)

當時 作業을 두고 金日成은 높이 評價하고 있다. 즉 「數千年来의 封建制度를 永久히 絶滅하는 事業이 成功하였다」던가 또는 「北朝鮮의 民族統一戰線은 土地改革을 通하여 加一層 공고히 되었다」던가 말하고 있다. 7)

그러나 한편 土地를 잃은 사람들의 가슴엔 平生토록 怨恨이 사모쳐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平生토록 가져 보지도 못한 土地를 뜻 밖에 無償으로 分配받게 된 農民의 心情도 數千年来의 生活觀念으로 道德的 罪惡感을 느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곧 北韓에 있어서 農業協同化가 이룩된 것은 아니다. 이른바 漸次性的 原則이라는 名目下에 그 實施를 段階別로 나누어 強行하게 된 것이다. 即 農業協同組合은 單純한 形態로 부터 높은 形態까지 三分類하여 그중 어느 것을 自由롭게 選擇하게 하고 貧農에서부터 始作하여 中農, 富農에게 強要하는 段階式을 취한 것이다.

여기서 參考로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 形態 — 努力協助班으로 재래의 소거리 및 품앗이 반보다 한 급 發展한 가장 單純한 形態

第2 形態 — 土地와 生産道具에 대한 私的 所有를 保存하면서 土

註6) 徐南源 著,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PP.47-48

註7) *ibid.*, P.48

地의 利用權만을 統合하고 共同勞動을 하며 共同經理를 運營하되 勞動과 出資한 土地에 依하여 分配를 實施하는 半社會主義的 形態

第3 形態 土地와 基本生産手段을 統合하고 勞動에 의해서만 分配를 하는 完全한 社會主義的 形態등이다.

그리하여 現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보는 所謂 第3 形態의 段階를 取하고 있다. 農土와 農機具, 牧畜을 모두 協同農場의 所有로 歸屬시키고 있으며 協同農場에 加入한 農民은 다만 勞力에 依해서 分配를 받는 社會主義的 形態로 運營되고 있는 것이다. 8)

좀더 具體적으로 보면 協同農場에서는 最高機關으로서 農場員總會와 代表者 會議이 있으며 總會 또는 代表者會議에 依해서 構成되는 管理委員會와 檢査委員會가 있다. 管理委員會는 總會 또는 代表者會議의 決定을 執行하는 執行機關이며 檢査委員會는 組合의 財產狀態에 對한 監督, 組合員의 身屬 請願의 處理를 한다.

이와 같이 協同農場 運營에 있어서 必要한 機關들이 만들어 있으나 모든 運營이 黨의 強力한 指示에 依해서 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實際로 民主的인 運營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 즉 農場의 最高機關인 總會는 月1回以上 開催하기로 되어 있으나 總會는 거의 開催되지 않고 黨이 一方的으로 이를 運營하고 있는 形便이다. 다음 協同農場員에 對한 勞動報酬(分配)는 所謂 「社會主義的 分配制」에 依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各農場員의 가동율과

註 8) 「民主統一論」(統一研修所), 1973年度(1), P.182

作業能率에 따라 勞力日이 確定되고 이 勞力日에 基準하여 年末 또는 年初에 開催되는 協同農場 決算總會에서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分配된다.

決算에서 農民에게 分配되는 몫은 그 協同農場에서 生産된 總收穫高에서 一定한 양을 控除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分配하게 되는 것이다. 管理委員會에서는 各農民에게 決算分配明細書라는 것을 戶別 單位로 作成하여 제시해 준다. 이 明細書에서는 總勞力日數와 分配總量 公제량 殘量등이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公제량을 보면 協同農場마다 差異는 있으나 大体로 種子代 約3% 飼料代 1% 化学肥料代 4% 農機械使用料 2% 관개사용료 4% 농기구 구매대 10% 農場施設擴張費(공동축적비) 30% 관리운영비(사회근 화기금) 7% 원호기금 1.5% 計 62.5%이다.

그렇기 때문에 公제한 나머지는 불과 37.5%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分配되는 穀物은 벼,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밀, 감자, 보리 등이며 콩, 팥 또는 용에작물인 면마, 누에코치 등은 分배물의 対象에서 除外된다. 또한 地域的으로 農産物 生産이 다르기 때문에 分配되는 穀物도 다르다. 이러한 경우, 1959년까지는 相互 交流를 통한 交換이 없었는데 그후부터는 国家的으로 중앙에서 조절한다. 예를 들면 大部分 추운 지방에서는 감자가 많이 生産되는데 이런 경우 감자만을 分配받는 것이 아니라 中央統計에 의한 다른 穀物과 交流를 통해서 벼와 보리, 옥수수 등을 分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分配받은 것은 모두 自由로이 처

分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수매에 義務적으로 應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국가수매의 量은 每農場의 家族에 따라 1年 食糧分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야 한다. 食糧으로 供應하는 양은 農場 員 家族 1人當 粗穀 400 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들은 200 Kg~ 250 Kg 등으로 換算하고 있다. 이런 粗穀을 정리하면 1년에 成人의 境遇 250 ~ 260 Kg程度가 되는데 이는 勞働者 事務員들의 年間食糧配給總量과 비슷하다. 그러나 勞力者가 不足한 農家의 경우에는 分配에서 問題가 생길 可能性이 있다. 即 5名의 家族中 3名의 勞力者가 있는 家庭과 한 사람 (부인은 병으로 노력 불가능하며 유아들만 3명 있을 경우) 만 있는 家庭과는 点数의 累計에 의하여 分配하는만큼 分配量도 3 : 1의 比率로 된다. 勿論 現金分配도 같은 比率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共同勞力으로 經營해 온 協同農場이라 하지만 農家마다 勞力者數와 勞力投下量에 따라 差異있는 收入과 生活을 하게 된다. 이처럼 勞力者가 不足한 農家は 不可避하게 貸與穀을 먹게 되며 또는 協同農場 基金中 「援護食糧」으로 남겨 둔 것으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다. 補助를 받게 되는 家庭은 所謂 成分이 나쁜 越南者 家族등은 해당이 안되며 戰死者 家族 또는 戰爭 當時 被殺된 家族등 所謂 그들이 말하는 成分上 좋은 사람만이 優先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9)

註9) 「北韓의 生活實態」(国土統一院) 1971.12. PP.169 ~ 172

以上으로 協同農場을 拠点으로 하는 農民의 基本的인 生活關係를 檢討해 본 셈이다. 農民階層이 他階層에 比해서 特히 勞働者階層에 比해서 어떠한 生活水準에 놓여 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材料를 入手못했기 때문에 實証的으로 例証할 수 없으나 大體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미 勞働者階層生活關係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農民은 勞働者 보다 落後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引用文에서도 能히 엿 볼 수 있다. 즉 「全人民的 所有가 支配하는 工業은 協同的 所有에 基礎하고 있는 農業에 比해 物質 技術的 土台에서 優越하며 都市勤勞者들의 技術, 文禮 및 思想 水準도 農民들 보다 높다. 이르말미암아 工業에서 生産力과 勞働生産能率은 農業에 比하여 높은 水準에 있게 된다. 이것은 都市 勤勞者들이 農民들 보다 더 많은 所得을 얻을 수 있는 條件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¹⁰⁾ 라고.

이러한 事實들은 역시 農民階層의 潛在的 不滿要因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3. 事務員階層의 生活關係

事務員의 種類는 從事하는 기관에 따라 여러가지 種類로 区分된다. 즉 ① 黨機關에 從事하는 사람들, 이른바 「黨일꾼」이 있고 ② 行政機關에 從事하는 「政務員」, ③ 立法機關에 從事하

註 10) 안병영, 前揭書, P. 88에서 再引用

(김원삼,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사무원과 農民生活의 均衡的 向上) 經濟研究 (1965.3호), 사회과학원 經濟연구소간, P. 16

는 「입법정무원」, ④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법 정무원」, ⑤ 사회안전성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 안전원」, ⑥ 教育機關에 從事하는 「교육 정무원」, ⑦ 其他 정무원이 있는데 기타 정무원으로 「과학원」을 비롯한 各研究所와 文化機關 또는 海外에 派遣되어 있는 대사관, 영사관, 무역대표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對外文化連絡委員會」와 같은 海外 工作機關에 종사하는 사람등의 정무원을 들 수 있다. 11)

이러한 種類의 事務員 중에서도 「당일꾼」은 가장 核心分子들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꾼으로 종사하는 것을 가장 榮譽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黨機關은 黨의 組織原則에 準하여 行政的 또는 生産적 單位로 組織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꾼」의 수도 組織에 따라 配置되고 있다. 「당일꾼」들의 수는 約4~5만명으로 推算되며 「중앙당」 및 각도 직할시와 시 구역 군·리의 行政單位와 「2급기업소」이상의 工作企業所와 各 大學(136개) 文化機關 그 밖에 「사회 안전성」, 「인민군」, 「교통성」등의 機關에 黨委員會가 組織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黨 機關에 從事하는 사람은 모두 「당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報酬額을 中心으로 事務員들의 内部生活關係를 一瞥해 보자.

事務員의 報酬는 1970年9月 勞動者와 함께 31.5% 引上하여 平均 70원線(約29弗)에 達했다고 公式發表하고 있다.

註11) 「北韓의 生活實態」(國土統一院) 1971.12. P.197

그것을 通觀해 볼때 端的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全体的으로 低廉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所謂 高位官僚와 企業所의 專門管理職의 경우는 優待되고 있는 反面, 中級以下の 事務職 終事者는 오히려 上級者 勞動者에 比하여 劣等한 報酬水準에 머물고 있음을 본다. 여기 各級數別 月勞賃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12)

○ 中央公務員의 경우

部長 (長官級)	300 - 330 원
副部長 (次官級)	210 - 250 원
局長	160 - 190 원
課長	80 - 100 원
指導員	60 - 70 원

○ 郡級公務員의 경우

委員長 (郡守級)	130 - 155 원
副委員長 (副郡守級)	80 - 90 원
部長	65 원
指導員	50 - 60 원

○ 特級企業의 경우

支配人	260 - 310 원
技師長	200 - 250 원
部長	120 - 130 원

註 12) 「民主統一論」(統一研修所 1973年度(1) PP.194-195

0 1級企業의 경우

支配人	200 - 230 원
技師長	150 - 200 원
部長	90 - 110 원

0 2級企業의 경우

支配人	155 - 180 원
技師長	130 - 150 원
部長	80 - 90 원

0 3級企業의 경우

支配人	105 - 130 원
技師長	90 - 110 원
部長	70 - 90 원

다음 도급 당간부와 社会团体的 長級の 경우를 보면, (1970.9.1
事務員 俸給 31.5% 인상을 계산치 않음)

0 도급 당간부 월수입

책임비서	200 원
비서	150 원
부장	80 - 120 원
부부장	80 - 85 원
과장	65 - 70 원
책임지도원	57 - 60 원
지도원	50 - 55 원

○ 社会团体的 長級の 경우

聯盟委員長	60 원
聯盟指導委員長	40 원
사노청 위원장	50 원
사노청 지도위원급	35 원
女盟委員長	40 원
俱樂部主任級	50 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種 社会团体的 長級の 報酬水準은 意外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事務員은 俸給以外에도 糧穀의 配給을 받고 있다. 糧穀配給에 있어서는 1965년에 配給基準이 改正되었다. 参考로 改正以前の 狀況을 보면 重労働者 및 有害労働者の 경우에는 白米와 雜穀의 比가 4 : 6 乃至 5 : 5로써 800-1,000 ㄱ 配給받았고 一般労働者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条件下에서 700 ㄱ을 配給받고 있었는데 反해서 高級官吏와 党幹部는 全量白米로서 800 ~ 1,000 ㄱ의 糧穀을 받고 있었다. 그렇던 것이 改正以後에는 重労働者 및 有害労働者의 경우 白米와 雜穀의 比가 5 : 5로서 800-1,000 ㄱ, 一般労働者의 경우 700 ㄱ, 그리고 一般事務員도 700 ㄱ (평양시 경우에만) 配給 받게 되었으며 한편 高級官吏 및 党幹部는 白米와 雜穀의 比가 3 : 7로써 配給받게 되고 있다. 13)

註 13) 北韓의 生活實態, (国土統一院) 1971.12. PP.9-17

그리고 住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은 特号住宅 乃至 4号住宅의 最高待遇를 받고 있다. 現在 住宅에는 5種의 級이 있는데 가장 낮은 級은 방(9척×12척) 하나에 부엌 반칸짜리고, 4등급으로 올라가면 온돌방 둘에 마루 하나, 부엌, 倉庫, 浴湯에 便所까지 붙어 있고 5등급에서는 정원까지 달린 독채의 家屋이다. 一般的으로 配分되는 住宅은 連立住宅이거나 「아파트」이거나 방 두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방 수의 결정은 家族의 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家族의 構成要素에 依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3급등수 以上の 것 부터서는 주로 位階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한다. 14)

그럼 다음에는 北韓에 있어서의 任命과 昇進에 關해서 일별해 보기로 한다.

먼저 任命에 關해서 보면 北韓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의 것과는 相違하다. 여기 몇가지 特徵的인 것만 들어 보면 卽

① 資格檢証方法으로서 學校 卒業者를 任用하는데도 따로히 學校試驗이라고 하는 筆記試驗을 치르지 않고 出身成分, 党性, 學歷, 經歷등을 書類로 評價하여 檢証하고 있으며 이를 委員會에서 綜合 最終

註14) 양재모, 「北韓의 生活環境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2. 6

的으로 審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學術試驗을 치르지 않는 理由는 1次로 行政力量 또는 事業能力을 評價하는데 있어 知識, 技術의 程度가 그렇게 重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있으며 그것 보다는 党性이 重要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特히 黨幹部 任命에 있어서는 實務能力和 才能보다도 出身成分과 社會成分을 가장 重要視하며 周圍環境을 徹底히 內査한다.

한편 정무원에 대해서는 「당일꾼」에 比하여 比較的 緩和政策을 씀으로써 단순한 成分關係와 党性에만 注重하지 않고 專門性을 가진 者도 任用이 되었으나 새로운 세대의 教育을 받아 專門性도 가지면서 党性도 강한 者를 任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초기의 專門性때문에 任命된 者도 도태되기 始作하였다.

② 北韓에서는 軍關係除隊者中 上佐以上の 高級軍官과 中佐以下の 初級 軍官除隊者와를 区分하여 公職에 任命하고 있다.

上佐以上の 除隊者는 大學卒業者와 같이 第5事務局 幹部部에서 直接 配置한다.

中佐以下の 除隊者는 民族保衛省에서 市·道인위로 인원수만 配定한다. 上佐以上の 경우에는 第5事務局에서 本人이 除隊된 동기와 중앙당의 指示에 따라 一定한 批准節次를 거쳐 보임하게 되며, 中佐以下の 境遇에는 충원요청이 있는 시·도에 配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黨의 方針에 따라 實施하며 시·도인위에서는 해당

시.도당 간부와의 指示에 따라 一定한 비준절차를 거친후 配置
發令하게 된다.

③ 昇進에 있어서도 採用 및 任命때와 마찬가지로 昇進을 위한
고시제도는 없다. 各 職位別 最低服務年限制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公職者가 昇進을 위한 計劃的인 行動을 할
餘地도 없으며 구태어 昇進하려는 慾望을 表示하지 않는다고 한
다. 昇進의 基準은 채용기준과 거의 같다. 그 기준으로서

①당성 ② 출신성분 ③ 논리수준 ④ 實務能力-經力上의 能力과
평정서상의 能力 ⑤ 社會生活-私生活 및 인근의 輿論 ⑥ 포상
⑦ 南韓에 연고자 유무 ⑧ 당요인의 背景 등을 들 수 있다.

昇進을 위한 비준기관은 昇進의 위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
러나 결국 당의 의사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15)

註 15) 「南北官僚制度의 比較研究」 (国土統一院) 1972.12.
PP. 45~54

「北韓의 生活實態」 (国土統一院) 1971.12.
PP. 196~207

四. 北韓 住民의 社會意識構造 形成에 있어서의 Ideology 教育政策의 意義와 中心課業

1. Ideology 教育政策의 意義

우리는 前章에서 지난 20 餘年間の 北韓에 있어서의 階層別 生活關係에 대하여 적어도 基本的인 面만은 究明해 보았다. 卽 모든 重要 生産手段은 國有化 乃至 社會化되고 있었으며 勞動者는 主로 國營企業所에서 그리고 農民은 主로 協同農場에서 그리고 事務員은 그들의 作業을 企劃하고 管理하며 運營하는등 諸般 事務를 處理하고 있었다. 各己 作業場도 다르고, 作業內容도 다르고, 또한 分配의 內容도 다르지만 한결 같이 共同勞力과 共同分配라는 所謂 社會主義 原則下에 共同生活을 營爲하고 있었다. 이것은 確實히 數千年來의 從來의 生活樣式하고는 根本的으로 다르며, 또한 우리의 것 과도 根本的으로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生活關係의 社會主義的 基本的 政策은, 이미 政權을 잡은 初創期 1946 年부터 所謂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産業國有化에 關한 法令」등으로 始作된 것이었다.

事實, 이때부터 벌써 北韓 社會에서는 從來의 社會意識構造의 傳統性과 保守性은 急進的으로 動搖하기 始作하였으며 새로운 方向性을 찾는 社會意識構造形成이 要請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그 새로운 意識構造形成에 積極的으로 役割作用하여 社會主義

的 社会意識構造 方向으로 向導해 간 것이 바로 北韓政權의 Ideology 教育政策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生覺할 때 北韓의 社会意識構造形成에 있어서 Ideology 教育政策이 갖는 意義는 참으로 至大하다고 하겠다.

2. Ideology 教育政策의 段階的 中心課業

北韓의 Ideology 教育政策을 分析함에 있어서 崔光石氏의 分類方法에 따라 中心課業別로 時期를 나누어 考察하는 것이 便利할 것 같다. 即

第一期 「建国思想總動員運動」時期(1945.8.15~1953.7.)

第二期 「階級敎養」時期(1953.8.~1958.10.)

第三期 「共產主義敎養」時期(1958.11 ~ 現在)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것을 各 時期別로 主要한 것만 檢討해 보기로 한다.

① 第一期 (1945年8月15日~1953年7月)

이 時期에 있어서의 北韓政權의 基本口號는 이른바 「建国思想總動員」이었다.

지난 36年間の 日帝 植民地 統治下에서 獨立国立 建立에 對한 우리겨레의 絶실한 念願을 利用하여 共產政權의 土台를 튼튼히 구축하였으며 同時에 所謂 「南半部解放」이라는 이름밑에 精神武装을 서두른 時期이다.

事實 解放直後 勞動者 階級과 農民階級の 所謂 革命的 力量은 微弱하였고 거의 期待할 수 없을 程度였다. 朝鮮總督府 統計에 依하면 1940年現在 南北韓을 通해서 勞動者 數는 겨우 23萬餘 名에 不過하였다. 그리고 또한 殖民地의 經濟構造下에서 勞動者의 大多數는 小規模工場에 分散 就業하고 있었으며 大企業에의 集中現象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殖民地統治下에서 日本人勞動者에 比하여 差別待遇를 받고, 長期間 勞動을 強要당하여 보잘것 없는 低賃金을 支拂받음으로서 勞動者들은 潛在的으로 革命性을 가질 程度였다. 그러나 그 革命性도 共產主義를 希求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待遇와 勞動條件에서 惹起된 慾求不滿이 潛在的인 「나소나리즘」과 相乘作用한 것이었다. 農民의 境遇도 勞動者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韓日合併 直後 強行된 土地調査令에 依하여 적지 않은 農民들이 土地를 喪失하였고 뒤이어 1930年代에 접어들면서 發生하기 始作한 慢性的인 農業恐慌으로 多數의 農民들이 零細農으로 轉落하였다. 이러한 對象은 日本統治者들에 對한 農民들의 憎惡心을 造成시켰고 그 結果 小作爭議를 惹起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條件도 散発的인 運動을 유발시키는데 지나지 않았고 大多數 農民들은 傳統的인 政治的 無關心性이 作用되어 土地를 渴望하는 革命的 力量을 發揮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註1)

註1. 方仁厚著,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PP.239-240.

여기에 政權을 잡은 北韓 共產黨은 群衆戰取의 必要性에서 「思想教育」을 急先務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共產黨은 黨의 名稱까지도 「勞動黨」(1946年8月28日)으로 바꾸고 共產主義 냄새를 피우지 않고 洗腦教育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제일 適當한 口號로 登場한 것이 바로 「建國思想 總動員」이라고 한다. (註2)

따라서 「建國思想 總動員」이란 口號속에는 本來 勞動者, 農民을 革命的 階級으로 敎養시킨다는 北韓政權의 當面 實踐課業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이른바 「20個政綱」으로 나타나고 있다.

當時, Ideology 教育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學校教育政策에 關해서 보면, 所謂 「20個政綱」에 依해서 言及되어 있기는 하나, 日本잔재의 清算과 階級意識을 鼓吹할 것을 強調하였을 뿐 具體的인 對策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었다. 事實 이 當時 1946年10월에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4個大學이 建立되었고 「人民學校」가 若干 增設되었으나 北韓의 教育은 아직 土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47年4月8日에는 成員教育 및 職場教育體系에 關한 決定을 公告하고 兩쪽의 統一的 連結을 劃策하였으며 Ideology 教育도 차츰 實踐化되어 갔다.

註2.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教育, 「垂細垂研究」所載, P.233.

② 第二期 (1953 年 8 月 ~ 1958 年 10 月)

北韓은 休戰後부터 所謂「戰後 人民經濟 復舊建設」(1954 ~ 56 年) 에 着手하였다. 農業의 協同化를 위한 經濟的 政治的 基礎 作業을 完成하여 1958 年末에 가서는 北韓은 農業集團화와 個人에 依한 商工業 活動의 禁止등 私有財産制度를 完全히 廢止하였다. 한편 이 時期에 있어서의 Ideology 教育政策面의 中心課業으로서는 「階級敎養」을 前面에 내 세우게 되었다. 卽 1955 年 4 月에 勞動黨中央委擴大全員會議를 召集하고 「階級敎養을 強化할데 對하여」를 討議하고 本格的인 對策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時期에 「階級敎養」을 부르짖게 된 表面上 理由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전면적으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향하여 착취제도와 착취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며 폐허위에서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과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의 사상과 계급의식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註3)라고

그러나 이것은 表面上 理由이고 그 眞意는 딴 곳에 있다 라고 崔光石氏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註3.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출판사) —崔光石 前掲 P.234 에서 再引用

「첫째, 흑심하였던 6.25 動亂의 피해를 復舊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와 難關을 克服해야만 되고 戰爭時期 이상으로 耐乏生活을 해야만 되는 實情이었음으로 이를 참고 견디기 위해서 階級意識의 계고를 強調하는 것이 効果的이라고 공산당은 打算하였다.

말하자면 勞動階級처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라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공산정권은 戰後 經濟政策의 總路線을 「重工業 重点主義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各階各層의 반발을 階級鬭爭이라는 名目으로 抑壓하는 것이 効果的이라고 간주하였다…….

세째로, 戰時時期에 共產軍의 南侵과 유엔軍의 北進으로 非共產主義 思想에 感染될 可能性이 많았다고 打算하고 이를 除去하기 위해서 「階級敎養」을 強化할 必要性이 제기되었다.

네째로, 鎭日成派는 反對派를 完全히 去勢하기 위한 精神武裝과 合法的 口實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反對派 除去後에 뒤따를 반발을 抑壓하기 위해서 階級敎養을 強化할 必要가 있었다. ……

다섯째, 未久에 실시할 豫定으로 있는 私有財産制度의 철폐와 個人에 의한 商工業活動의 禁止에 따르는 「북한」住民들의 반발을 彈壓하며 그에 대한 事前措置로서 階級敎養을 強化할 必要가 있었다」(註4)라고 한다.

한편 이 時期에 있어서는 蘇聯 共產黨 第20次大会(1956年2月)을 契機로 시작된 中蘇紛爭이 점차 노골화되고 北韓政權은 兩者擇

註4. 崔光石, 前掲論文, pp.234-235.

一해야 할 立場에 서게 되었으며, 또한 이 時期에 北韓에서는 蘇聯, 中共을 비롯한 東歐共產國家들로 부터 받은 休戰後의 經濟援助가 거의 消費된 어려운 處地에서 第一次五個年計劃을 推進하게 되었으니 所謂 「千里馬運動」이라는 強制的인 增産競争運動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思想敎養의 必要性이 強하게 提起된 것이라고 思料된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勞動黨의 基本口號는 「모든 것을 戰後人民 經濟復舊建設에로!」였다. 學校敎育政策에 있어서도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라는 口號를 내세워 내대적으로 勞力動員에 參與하게 되었다. 授業은 午前中에 끝나고 午後는 「人民學校」3 年生부터 建設場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註5)

한편 成人敎育政策面에 있어서도 1955年4月에 中委 全員會議가 있는 後 各種 再敎育期間 및 社會敎育機關을 通하여 「階級敎養」을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徹底한 理論敎育을 實施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957年5月30日에는 所謂 黨務委員會에서 「反革命分子와의 鬪爭을 全黨的 全人民的 運動으로 展開하는데 對하여」라는 決定을 採擇하여 소위 전북된 계급의 反抗勢力, 即 反革命分子와의 鬪爭을 實踐的으로 展開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또한 1958年12月부터 1960年末까지의 約 二年間에 걸쳐 所謂 「中央黨 集中 指導事業」으로 發展하였던 것이다.

註5. *ibid.*, p.222

(3) 第三期 (1958 年 11 月 ~ 現在)

이 時期에 있어서의 北韓政權의 基本的 Ideology 教育政策의 中心課業은 이른바 「共產主義敎養」이라고 할 수 있다.

休戰以後부터 점차로 私有財産制度가 철폐되기 시작하여 1958 年 末에는 完全히 철폐되고 이른바 農業集團化등 社會主義的 經濟體制가 完成되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北韓政權은 社會主義的 土台에 相應한 Ideology 의 確立을 促進하게 되었는데 1958 年 11 月 20 日 所謂 「全國市, 郡黨委員會 煽動員들을 위한 講習會」에서 한 金日成의 演說 「공산주의의 교양에 대하여」가 直接的인 契機로 되었으며 한편 이것이 Ideology 教育의 基本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當時 金日成은 그 演說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強化할 必要性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 속히 社會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公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사상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前進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 대중의 머리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낡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社會주의 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前進를 가로 막는 온갖 낡고 부패한 것을 쓸

어 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註6)라고.

그리하여 金日成은 「共產主義 敎養」의 重點을 다음 여섯개에
둘 것을 強調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교양하는것」

둘째,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인식시키는것」

셋째,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
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하는것」

네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

다섯째, 「사람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문제」

여섯째, 「무단한 혁명의 사상으로, 무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
는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 등이다. (註7)

이것이 金日成이 規定한 「共產主義 敎養」의 基本內容이며, 北韓
에서의 Ideology 敎育의 指標로 되고 있다.

그런데 特히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네째의 所謂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實踐敎養事業으로서 「革命傳統敎養」을 強調하게 되었

註6. 「김일성선집」(조선노동당출판사 1960年版), pp.129~130.

崔光石, 前掲論文 P.242에서 再引用.

7. ibid, pp.242~243.

다는 점이다. 即 그들이 強調하고 있는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의 5개로 구분되고 있다. (註8)

그리하여 1964年 上半期에는 北韓에서 製作된 8편의 「藝術映画」 가운데 6편이, 그리고 82편의 記錄 및 科學映畫中 20편이 「革命傳統」을 主題로 하였다 (註9)고 한다.

이것은 곧 「革命傳統敎養事業」이 얼마나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實證的인 資料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革命傳統敎養」은 本來 1930年代 長白山脈一帶를 中心으로 反日 遊擊鬪爭을 展開한 史實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며 한편 그 史實이 主된 內容이 되는 것이므로 金日成의 反日鬪爭은 英雄視되는 契機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러한 英雄視는 나아가서 金日成에 對한 所謂 偶像化 및 唯一思想을 鼓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執權者에 對한 權威意識을 높이는 手段이 되는 것으로 Ideology 敎育 政策面에서는 그 意義가 大端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 政權은 1961年 9월에 있었던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註8. 「로동신문」, 1964年 10月 2日 字論說;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구」

崔光石, 前揭論文 P.250에서 再引用

9. ibid

採擇된 基本方向에 입각하여 教育政策의 中心課業의 하나로써 「革命傳統敎養」을 더욱 強化하고 젊은 世代들을 勞動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犧牲할 줄 아는 集團主義精神에 투철한 人間으로 敎養할 것을 強力히 指示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同時에 教育部門의 「千里馬運動」을 더욱 強力히 推進시키며 「學生社會義務勞動制」를 嚴格히 준수함으로써 學校施設과 教育的 환경을 自體의 힘으로 整備 擴張하는 데 最善의 노력을 다할 것을 指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文化革命의 基本으로 되는 一般知識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北韓의 모든 成人들이 中學卒業 이상의 學力을 所有하도록 成人敎育을 더욱 強化할 것을 指示하고 있는 것이다. (註10)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Ideology 教育政策은 學校敎育에 있어서나 成人敎育에 있어서나 어디에 있어서든 「生産性」敎育과 直結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千里馬運動」은 「生産性」敎育이면서도 Ideology 敎育 말하자면 共產主義 敎養 敎育이라는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北韓 Ideology 敎育 政策面에 있어서 한 特徵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成人敎育은 「生産性」과 直結되므로 政權 初創期부터 重視하여 學校敎育體系와 함께 成人敎育體系를 確立하여 補完하여 왔

註 10 . ibid, P. 225

다. 即 1967年 4月 1日 改編된 学制에 依하여 成人教育體系에 있어서는 勤勞者學校 2年 勤勞者中學校 3年으로 되었다. 이것은 過去보다 知識水準이 提高되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며 即, 成人教育 計 5年을 畢하면 一般教育體系的 人民學校 4年과 中學校 5年 計 9年課程과 同一하게 하여 9年の 義務教育制를 필한 것과 同等한 資格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註11)

이상이므로써 北韓政權의 Ideology 教育政策의 中心課業을 段階別로 나누어 考察해 본 셈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社會主義 發展過程에 있어서의 理念을 中心으로 分析한 것이었으므로 다음 提起되는 問題는 그러한 理念이 어떠한 組織을 통해서 傳達되고 있는가 하는 組織生活에 關한 것으로 되겠다. 어떠한 理念이든 그것이 効果的으로 傳達되고 體質化되어 實踐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組織을 통한 體系化가 이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命題가 一般的으로 容認되어 있기 때문이다.

3. Ideology 教育政策과 組織體系

우리는 앞서 Ideology 教育政策 分析에 있어서 그 主導的인 担当者가 「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現在, 北韓社會는 所謂 「朝鮮勞動黨」이라고 表現되는 黨組織을

註11. 조성기, 북한의 사회교육제도의 변천 및 실제, 1970.9.
P.19.

骨幹으로 共產主義社會로 指向하고 있다. 따라서 勞動黨을 共產黨으로, 그리고 勞動黨員을 共產黨員으로 呼稱되기도 한다.

現在 勞動黨員의 數는 180 萬으로서 1,500 萬 全体住民의 12 %에 達하고 있다.

憲法上으로는 北韓의 最高 主權機關은 「最高人民會議」이며, 그것은 立法 代議機關으로서 最高權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實際機能은 黨이 行使할뿐, 「最高人民會議」는 勞動黨의 諸般 決定이나 意思를 事後 承認 또는 公告 宣傳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 關係는 다음에 金日成이가 말한 黨의 性格에서 明白히 볼 수 있다. 卽 그는 말하기를 「우리 黨은 勞動階級과 其他 勤勞人民을 領導하여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建設하는 戰鬪的 組織입니다. 또는 우리 黨은 朝鮮에서 階級鬪爭과 革命을 領導하는 唯一한 黨입니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社會主義 革命에 敵對되는 一切의 反革命的 要素를 徹底히 鎮壓하며, 勤勞人民의 利益과 革命의 利益을 擁護하는 勞動階級の 強力한 武器입니다」(註12)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黨만이 北韓에 있어서 基本的인 指導者의 役割을 遂行할 能力을 가지고 있으므로 重要的 政治的 또는 組織的 問題도 黨의 指導的 指示가 없이는 如何한 團體 機關도 決定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最高

註 12. 民主統一論, (統一研修所), 1972.5.25, P.151.

主權機關으로서 所謂 「最高人民會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最高人民會議」의 基本的인 指導는 역시 黨이 하는 것이므로 그의 實際機能은 黨이 行使한다고 봐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關係上 한편 條文上으로는 立法 行政 司法機關이 分立되고 있으나 實權은 黨이 가지고 黨에 依해에 統一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北韓 勞動黨은 法規의 最終 解釋者이며, 政策의 決定者이자 그 執行의 監督者로 되고 있다. 좀 더 具體的으로는 「勞動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이 事實上的 實權을 掌握하고 있다.

現在 北韓 社會에서는 그러한 唯一한 實權을 가지고 있는 「朝鮮勞動黨」에 依해서 모든 行政組織은 勿論 生産組織과 學校組織 그리고 軍隊組織까지도 統轄되고 있는 것이다. 卽 「中央人民委員會」 「道人民委員會」 「郡人民委員會」 「里人民委員會」의 政治 行政組織과 各種 工場委員會, 各급 學校黨委員會, 各급 部隊單位的 「人民軍黨委員會」등, 그들의 黨組織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는 勞動黨의 後備隊라고 하는 所謂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社勞青) 組織되어 있어서 14 歲以上 30 歲未滿의 모든 靑少年 男女를 組織對象속에 吸收하고 있다. 卽 「社勞青中央委員會」밑에 各道, 直轄市 「社勞青」, 市郡區域 「社勞青」, 里 「社勞青」등 組織體系를 確保하고 있으며 各級學校와 各級軍隊組織 單位部隊에 까지 社勞青組織을 속속드리 占有하고 있다. 社勞青이 勞動黨과 다른 點이란 勞動黨이 黨員資格을 가진 者들의 組織임에 反해서 社勞青은 14 歲以上 30 歲未滿의 모든 靑少年 男

女の 非黨員들의 組織이라는 点이다.

이러한 組織 以外에도 全体 女姓을 包括하는 「女性同盟」과 全体 勞動者로 包括하는 「職業同盟」 및 全体 農民을 包括하는 「農業勞動者同盟」등을 비롯하여 「文學 藝術 總同盟」等 70餘個의 外廓團體가 組織되어 北韓 住民은 二重 三重으로 吸收되고 있는 것이다. (註13)

한편 北韓에 있어서는 所謂 「人民班」이라든가 「5戶黨担当制」 組織에 依해서 統制되고 있다.

먼저 人民班에 関해서 보면, 平壤市를 비롯한 道庁所在地 및 區域(市)에는 行政組織으로 洞行政委員會가 組織되어 있다. 洞行政委員會는 數個의 人民班이 있으며 그 人民班은 15 - 20 世帯程度로 組織되어 있다. 人民班에는 반드시 洞行政委員會에서 任命된 班長이 있다. 人民班은 주로 家庭生活問題를 取扱하기 때문에 班長은 거의다 女子가 하기 마련이다. 人民班에서 하는 일은 班內 住民 移動 轉出 衛生 文化 勞力動員 思想教養 環境美化 住宅管理등인데 隨時로 모임을 갖고 모든 일을 決定한다. 轉出移動은 반드시 人民班長을 經由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人民班의 正規會議은 1個月에 1回이며 한 世帯에서 한 사람씩 義務的으로 參加해야 한다.

註13. *ibid.*, p.152.

人民班 會議에서는 人民班員들의 家庭生活 및 個人問題까지 広範히 取扱하며, 萬若 人民班會議에서 다른 곳으로 追放시킬 決定을 하고 洞行政委員會에 提出하면, 大体로 그 決定대로 履行된다.

다음 5戶担当制는 1958年末부터 始作된 住民 統制 方法의 하나이다. 即 北韓의 全世帯를 5戶씩 묶어서 熱誠黨員 1名을 配置시켜 「指導」하기 위해서 만든 制度이다. 5戶를 担当한 宣傳員은 各戶의 夫婦愛情關係 子女教育등 生活全般에 걸쳐 指導하고 監視하게 된다. 이에 對하여 1962年11月號 「勤勞者」에서 「5戶担当制에서는 責任指導員들이 5戶内外의 작은 世帯를 分担하는 만큼 每家庭 每個人들과 日當的인 接觸을 通하여, 그들의 知識 素質 趣味 希望 思想動態를 正確히(了解) 指導하게 된다.

5戶担当制 指導事業은 生産에서 家庭에 이르기까지, 成人으로부터 兒童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을 包括한다」라고 強調하고 있다.(註14)

이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住民生活은 徹頭徹尾 勞動黨의 指導 下에 組織된 集團組織에 依해서 統一的으로 統制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deology 教育政策面에 있어서의 實証的인 主体者는 「朝鮮勞動黨」이 된다. 黨의 意思가 곧 實踐的 理念으로 되며 위에서 말한 強力한 組織體系를 通해서 住民에게 注入되는 것이다.

註14. 民主統一論, (統一研修所), 1973年度(1), P.196.

적어도 北韓 住民의 階層別 社會意識構造는 이러한 性格의 過程을 밟고 形成되는 性質의 것이므로 그 強要에 對한 反應 如何의 實証的인 結果를 모르고서는 把握하기 不可能한 것이다. 換言하면, 現地調査를 통한 그 反應의 結果를 모르고서는 具體的인 階層別 社會意識構造를 把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北韓에서는 階層의 階級的 分化를 政策上 否定하고 있으니 各 階層의 社會意識構造에 對한 資料가 統計로서 公式 發表될 理가 없다. 여기 더 애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多幸히 그 反應表示로서의 北韓住民의 不滿要因을 分析한 資料를 얻게 되어, 이미 分析된 資料지만, 그것을 土臺로 本論文의 體制上 結論部分으로서 第五章을 두어 끝을 맺을까 한다.

五. 階層別不滿要因實態와 社會意識動向

1. 社會意識構造와 不滿要因

우리는 앞서 第二章, 第三章, 第四章을 通하여 概括的이지만, 北韓 社會에 있어서의 階層構成의 問題를 비롯하여 社會意識構造 形成에 있어서 「環境」으로 役割作用을 하는 生活關係를 各 階層別로 적어도 基本的인 것만은 把握할 수 있었고 다시 그 環境과 相應될 수 있는 Ideology 教育政策이 如何히 段階的으로 發展되어가고 있었는가를 一瞥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要約해서 좀더 具體化시켜 보면 첫째 階層構成의 区分 問題에 있어서 北韓은 階層의 階級的 分化를 否定하고 ①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에 依한 分類와 ② 「党性」에 依한 階層 分類를 劃策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前者에 있어서는 農業協同化 政策과 個人의 企業 및 商業 抹殺 政策으로 말미암아 벌써 1958 年末에 가서는 從來의 階層 種類는 아주 單純化되어 다만 勞動者 農民 事務員등이 가장 基本的인 階層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는 特히 政治的 目的에서 劃策된 것으로 우선 北韓 住民을 基本群衆과 複雜한 群衆으로 크게 두가지로 区分하고 基本群衆은 다시 核心群衆과 基本群衆으로 分類 그 外는 複雜한 群衆에 屬하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核心群衆은 勞動者 및 雇農, 貧農出身의 勞民으로서 過去나 現在의 政治生活에서 아무런 罪가 없는 党的 熟成分子를 말하고 基本群衆은 核心群衆에 屬하지 않고 複雜한 群衆이 아닌 勞動

者 農民層에 屬하는 者를 말한다. 反面에 複雜한 群衆이란 階級的 側面과 政治 및 社會生活에서 過誤를 犯한 者를 말하며 日帝 時의 經歷도 參酌하고 있다. 따라서 所謂 複雜한 群衆에 屬하는 階層은 恒常 監視와 制裁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다음 차례로 生活關係面에서 보면 北韓 住民의 生活은 基本的으로 社會主義的 經濟構造를 基盤으로 하고 있었으며 即 모든 重要 生産手段은 國有化 乃至 社會化되어 一切의 私有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勞動者는 主로 國營企業所에서 그리고 農民은 協同農場에서 共同勞力과 共同分配의 原則下에서 勞動하며 그 勞動의 量과 質에 依해서 分配를 받아 生活을 하는 所謂 社會主義的 集團 生活을 하고 있었다.

세 차례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北韓政權은 위에서 말한 그러한 社會主義的 生活關係를 維持 乃至 合理化시키기 위해서 Ideology 教育政策面에 있어서 生活環境에 따라 段階的으로 中心課業을 強調하고 있었던 것이다. 即 1958 年末까지는 主로 「階級教養」에 力點을 두었으며 그後 1959 年 부터서는 「共產主義教養」을 基本的인 中心課業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Ideology 教育政策 過程에 있어서의 特徵的인 것은 Ideology 教育政策의 主体者는 所謂 黨이며, 黨의 意思가 곧 實踐的 理念으로 되고 한편 그 實踐的 理念은 黨의 指導下에 있는 強力한 組織體系에 依해서 強力히 住民에게 注入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北韓 住民의 階層別 社會意識構造는 所謂 黨에 依해서

注入되는 「共產主義 教養」과는 不可分の 關係를 맺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共產主義 教養」의 具體的인 內容은 곧 階層別 社會意識構造의 概然性 乃至 方向性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 教養」 그 自体가 社會意識構造의 性格 規定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階層別 社會意識構造는 그러한 「共產主義 教養」과 各 階層別 具體的 生活關係와의 即 兩者의 關係에서 形成되고 性格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万若 이 兩者와의 關係에 있어서 否定的인 反應이 強하게 나타날 때에는 「共產主義 教養」 그 自体는 역시 否定的으로 拒否되고 따라서 社會意識構造의 性格도 否定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過程속에 나타나는 否定的 表示란 곧 「不滿」表示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不滿要因」에 依한 分析으로 階層別 社會意識構造 分析을 試圖해 보는 것도 한 接近法이 아닌가 여겨진다.

2. 階層別 社會意識 動向

여기 第五章 第二項에서 引用되는 基礎資料는 「北韓住民 不滿要因 分析」(1972.9)에 依拠한다. 即 이 資料는 越南歸順者 및 歸順(自首)間諜들의 친목단체인 「歸順同志會」所屬 會員들의 陳述을 設定한 項目에 따라 採集한 것을 그 內容으로 한 것이며, 同會所屬 四百餘 會員中에서 各道別로 人口比例伊況을 參酌하고 또한 比較的 信憑性이 있는 者 62名을 選出하고 이들로부터 越南 道

는 南下 直前에 있었던 犯罪事件으로서 記憶에 分明히 남아있는 것을 20件 内外씩 陳述토록 하여 이를 「아이템」別로 「어레인 지」한 것이다. 그리고 總 1千6拾個의 不滿事例 카-드中 無價値資料를 뽑아내고 남은 859枚의 바탕 위에서 整理한 것이라고 한다. 註1)

그리고 不滿要因分析에 있어서 使用될 模型으로 크게 6個를 選定하고 그 模型에 따라 몇개의 細分한 項目을 定하여 計 19個項으로 不滿要因이 抽出되고 있다. 여기에 우선 選定한 6個의 模型만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無産階級아닌 者의 教育制限 및 出世妨害에 따른 不滿 II 劃一的 配分体系에 따른 不滿 III 長期服務 強制勞動에 對한 不滿 IV 社會優位の 價値觀強要에 따른 不滿 V 不法不當処罰에 對한 不滿 VI 無神論 및 金日成 偶像化와 強要에 對한 不滿등으로 設定하고 있다.

1) 核心群衆의 不滿要因 實態와 社會意識 動向

共產主義者, 黨幹部, 軍 및 行政幹部和 그 家族들로 構成되는 核心群衆의 不滿件數를 보면 總 856件中 112件으로써 全體 不滿事例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核心群衆의 人口 數가 全體 北韓住民 數의 28%라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높은 比率의 不滿表示로 볼 수 있다.

註1. 「北韓住民 不滿要因 分析」, (國土統一院), 1972.9.

이것을 좀더 具體적으로 分析해 보면 核心群衆 中에서 党幹部의 不滿事例는 10件임에 反하여 共產鬪爭者의 不滿事例는 30件으로 나타나 있고, 軍 및 行政幹部의 不滿事例가 70件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北韓社會에 있어서 党幹部들의 社會的 待遇가 共產鬪爭者와 軍 및 行政幹部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不滿事例에서 特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① 党幹部의 10件의 不滿事例中 7件이 模型 不法不當處罰(V)에 對한 不滿表示로 나타나고 있으며 其中에서도 특히 〇 党幹部 횡포 2, 0 숙청 및 종파분자처리 5로서 不滿表示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政權內部에 얼마나 熾烈한 派爭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金日成一派의 얼마나 冷酷한 肅清이 行해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不當處罰에 對한 不滿表示는 強하면서도 模型 I (階級差別)에 屬하는 〇 共產政權에 對한 혐오 項目에는 한사람도 不滿表示가 없는 것은 注目할 일이라고 思料된다. 이것은 곧 根本적으로는 共產主義를 싫어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②의 特徵으로서 指摘할 수 있는 점은 党幹部의 不滿事例의 7倍를 나타내고 있는 軍 및 行政幹部는 70件의 不滿事例中 가장 많은 14件을 党幹部의 경우하고는 對照적으로 模型IV (社會優位의 價值觀強要)에 屬해 있는 〇 社會체제 (女性, 家庭, 情緒, 娛樂流行, 人情面의 不滿) 不滿으로 나타내고 있음은, 日常生活에 있어서 党幹部하고는 대조적으로 不便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模

型 I 에 屬하는 公産政權에 對한 項에 8 件이라는 不滿表示가 나타나 있는가 하면 模型 II (劃一的 配分體系) 에 屬하는 勞動當經濟政策 項에도 10 件이라는 不滿表示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軍 및 行政幹部는 一般的인 社會生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根本的으로 共産政權 및 體制를 否定하고 있는 面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基本群衆의 不滿要因 實態와 社會意識 動向

基本群衆의 경우 여기에서는 勞動者와 農民을 묶어서 處理한다.

不滿要因分析에 依하면 基本群衆의 不滿은 總 856 件의 不滿事例中 523 件으로 全體의 約 61%를 占하고 있다.

이것을 各 模型別로 보면 北韓社會體制(IV)에 對한 不滿이 29%, 不斷処罰(V)에 對한 不滿이 17%, 階級差別(I)에 對한 不滿이 16%로서 나타나고 있다.

좀더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면 基本群衆에 있어서의 가장 큰 不滿要因은 윗 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核心群衆의 軍 및 行政幹部의 경우처럼 北韓社會體制(女姓, 家庭, 情緒, 娛樂, 流行, 人情)에 對한 不滿으로 되고 있다. 其中 勞動者의 不滿事例 數는 53 件이며 農民은 68 件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둘째로 큰 것은 黨幹部 및 行政幹部의 횡포에 對한 不滿이며 勞動者 36 件, 農民 35 件이다. 다음 셋째로 큰 것은 金日成 偶像化에 對한 不滿이며 勞動者 24 件, 農民 21 件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넷째로

는 強制勞動에 대한 不滿으로 나타나고 있다. 勞動者 20件, 農民 24件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 共產政權에 對한 혐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勞動者 13件, 農民 26件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끝으로 食料品不足에 따른 不滿으로 나타나 있으며, 勞動者 12件, 農民 22件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綜合 檢討 推理해 보면 역시 勞動者 農民層에 있어서도 軍 및 行政幹部와 같이 日常社會에 있어서의 生活의 自由가 가장 強하게 慾求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決코 偶然한 事實이 아니며 北韓 政權이 取하고 있는 社會主義 政策이 個人의 生活自由뿐만 아니라 基本階級으로서의 勞動者 農民의 生活自体와도 相應되지 못하고 背馳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精神的 自由에 對한 慾求는 ○당간부 羣衆에 대한 不滿件數와 ○強制勞動에 對한 不滿件數, 그리고 ○金日成 偶像化에 대한 不滿件數에도 如實히 表現되고 있음은 분다. 한편 이러한 精神的 自由의 慾求表現은 北韓에 있어서의 勞動者 農民 階層의 生活意識水準이 어느程度 向上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도 解釋된다.

3) 複雜한 羣衆의 不滿要因實態와 社會意識 動向

1970年末 北韓共產政權 社會安全省의 發表에 依하면, 北韓社會 複雜한 羣衆의 人口數는 1970年末現在 北韓住民 總數의 51%이다.

그런데 不滿事例 基礎資料(總856件)에 나타난 複雜한 羣衆의 不滿事例는 겨우 222件으로서 全體 不滿事例의 26%에 不過하다.

基本群衆 對 複雜한 群衆의 人口數는 大略 1 : 2.5 (21 % : 51 %) 일에 反하여, 不滿事例의 數는 概乎로 2.4 : 1 (523 件 : 222 件) 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나타난 件數面에서 分析 檢討해 보면 不滿事例 222 件中 112 件이 中·富農出身階層의 不滿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50 %에 該當한다.

이것을 不滿要因別로 보면 階級差別(I)에 따른 不滿이 93 件 (全體의 42 %) 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項目別로 보면 역시 〇공산정권에 대한 혐오에 대한 不滿件數가 46 件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〇계급차별 項目에 對한 不滿件數 27, 〇신분 및 이력서은폐교통項目에 對한 不滿件數 20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複雜한 群衆이 所謂 反動分子라는 누명하에 갖은 彈壓과 壓力을 받아 왔다는 點에서 當然한 結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〇사회체제項目에 對한 不滿件數가 25 件으로써 다른 項目에 比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 點은 앞서 核心群衆과 基本群衆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共通的인 現象으로 自然的인 結果 表示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異常하게도 세 많을 것이라고 推定되는 〇財産沒收 項目에 對한 不滿件數는 複雜한 群衆 全體를 通하여 겨우 9 件으로 되어 있고 또 〇당간부 징포項目에 對한 不滿件數도 겨우 11 件,

그리고 ○強制勞動 項目에 對한 不滿件數도 15件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때 一見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苦痛이 많으며 거기에 대한 不滿表示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一般常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에 對해서 여기 「北韓住民 不滿要因 分析」結果 報告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卽 「非基本階級(複雜한 群衆)의 不滿表示行爲가 極히 적게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加해지는 繼續的 彈壓과 학대가 그들로 하여금 不滿表示行爲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을만큼 主體的 自我를 喪失케 한 結果로 볼 수 있는 有力한 論拠가 된다. 有名한 「파블로프」의 條件反射理論이 그것이다. 파블로프(Pavlov)에 의하면, 生物은 어떤 意圖的인 刺戟을 反復的으로 받을 경우 固有的 先天的 遺傳과 같은 効果의 새로운 慣習을 갖게 된다. 卽 反復되는 同一條件의 刺戟으로 因해서 一定한 反射를 하게 된다는 것이 主된 內容이다.

共產主義 敎育方法이 「파블로프」의 이같은 條件反射 原理의 適用에 不過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런 原理를 北韓社會 非基本階級에 對한 彈壓策에 適用할 경우에도 同一現象과 結果가 發生한다고 보는 것은 無理가 아니다」(註2)라고 結果分析을 하고 있다.

生物을 實驗對象으로 한 「파블로프」(Pavlov)의 條件反射理論

註2. ibid, pp.50-51.

이 生物과는 다른 人間에게 어느 程度의 確實性을 갖는 原理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로서 提起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새로운 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卽 「複雜한 群衆」에 있어서의 이러한 現象이 「파블로프」의 條件反射理論이 適用된 結果이든, 혹은 政治的 無関心에서 惹起된 結果이든간에 社会意識構造에 있어서의 한 變化를 意味한 것으로 적어도 이것은 複雜한 群衆의 社会意識構造 分析에 있어서 새로운 焦点으로 될 것으로 믿는다.

이상 이것으로써 概括적이지만 北韓住民의 階層別 社会意識構造에 関한 分析을 끝낸 셈이다. 研究 不足을 다만 資料不足에 돌리면 서 붓을 맺는다.

1973.7.



발행일자	1973년 7월 일발간
발간업체명	주식회사 서라벌문예사
대표자	김재성
인가근거	내이 515.2-10803 (70.5.21)
참여자	부산대학교 범정대학
	허종욱

